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안내서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5. 9

고리원전단지 부지활용 종합검토 TF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하는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가. 참여기술자	5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다. 신용도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마. 업무중복도	10
합 계	100

※ 사업수행능력(PQ) 항목별 세부평가요소 및 배점은 [붙임1] 참조

②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수행실적의 증명)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신청서류)

- ① 당해용역 참여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 서류 [붙임2]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본 1부, 사본 1부를 3공 바인더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 ③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중 신용도 부문 평가서류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 5 조 (평가방법)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증명서, 확인서의 등에 의하며, 필요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실사할 수 있다.
 2. 참여기술자
 -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보유상황,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 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용역의 참여 건설기술자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 (2)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
: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및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 5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①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 제외
 2.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취소
 3.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사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적격자 등의 선정 및 결격)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 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시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 5 조에 ①항에 의한 경우 및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해산, 영업정지, 파산·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 7 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참여 신청자에게 개별접수를 문서로 통지하고, 접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평가기간 계산)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당해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관련규정의 참조)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참조하고 이상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10 조 (기 타)

-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③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 제17조 1항 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당해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PQ)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양식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1.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18)	등급	4
		경력	6
		실적	8
	분야별책임기술자(22)	등급	5
		경력	8
		실적	9
	분야별참여기술자(8)	등급	2
		경력	3
		실적	3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2)	교육훈련	2
【 소계 】			【 50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건수(면적)	8
		금액	7
	【 소계 】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7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 소계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등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 소계 】		
[마]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수행 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 (건수)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 소계 】		
【 총계 】			【 100점 】

2. 평가 항목별 점수 계산 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참여 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	등급	4	등급	기술사자격 보유 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배점		4.0	-	-	-		
		*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기술자에 한함.							
	경력	6	경력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배점		6.0	5.4	4.8	4.2			
	실적	8	경력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배점		8.0	7.2	6.4	5.6	4.8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 등급기준은 부표 1을 참조한다.									
참여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5	분야	기술사자격 보유 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도시계획	1.25	1.125	1.0	0.875	
				도로 및 공항	1.25	1.125	1.0	0.875	
	교통			1.25	1.125	1.0	0.875		
	조경			1.25	1.125	1.0	0.875		
	점수(계)	5.0	4.5	4.0	3.5				
*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평가는 부표1을 참조한다.									
경력	8	분야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도시계획	2.0	1.8	1.6	1.4					
도로 및 공항	2.0	1.8	1.6	1.4					
교통	2.0	1.8	1.6	1.4					
조경	2.0	1.8	1.6	1.4					
점수(계)	8.0	7.2	6.4	5.6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에 한함.									
실적	9	분야	8건 이상	8건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도시계획	2.25	2.0	1.75	1.5	1.25				
도로 및 공항	2.25	2.0	1.75	1.5	1.25				
교통	2.25	2.0	1.75	1.5	1.25				
조경	2.25	2.0	1.75	1.5	1.25				
점수(계)	9.0	8.0	7.0	6.0	5.0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 등급기준은 부표 1을 참조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	2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고급기술자 이상</th> <th>중급기술자</th> <th>초급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계획</td> <td>0.5</td> <td>0.45</td> <td>0.35</td> </tr> <tr> <td>도로 및 공항</td> <td>0.5</td> <td>0.45</td> <td>0.35</td> </tr> <tr> <td>교통</td> <td>0.5</td> <td>0.45</td> <td>0.35</td> </tr> <tr> <td>조경</td> <td>0.5</td> <td>0.45</td> <td>0.35</td> </tr> <tr> <td>점수(계)</td> <td>2.00</td> <td>1.80</td> <td>1.40</td> </tr> </tbody> </table> <p>*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에 한함</p>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도시계획	0.5	0.45	0.35	도로 및 공항	0.5	0.45	0.35	교통	0.5	0.45	0.35	조경	0.5	0.45	0.35	점수(계)	2.00	1.80	1.40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도시계획	0.5	0.45	0.35																																	
도로 및 공항	0.5	0.45	0.35																																			
교통	0.5	0.45	0.35																																			
조경	0.5	0.45	0.35																																			
점수(계)	2.00	1.80	1.40																																			
경력	3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7년 이상</th> <th>4년 이상</th> <th>2년 이상</th> <th>2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계획</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r> <tr> <td>도로 및 공항</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r> <tr> <td>교통</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r> <tr> <td>조경</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r> <tr> <td>점수(계)</td> <td>3.00</td> <td>2.8</td> <td>2.40</td> <td>2.0</td> </tr> </tbody> </table> <p>*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에 한함.</p>	분야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도시계획	0.75	0.7	0.6	0.5	도로 및 공항	0.75	0.7	0.6	0.5	교통	0.75	0.7	0.6	0.5	조경	0.75	0.7	0.6	0.5	점수(계)	3.00	2.8	2.40	2.0						
분야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도시계획	0.75	0.7	0.6	0.5																																		
도로 및 공항	0.75	0.7	0.6	0.5																																		
교통	0.75	0.7	0.6	0.5																																		
조경	0.75	0.7	0.6	0.5																																		
점수(계)	3.00	2.8	2.40	2.0																																		
실적	3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6건 이상</th> <th>6건 미만 5건 이상</th> <th>5건 미만 4건 이상</th> <th>4건 미만 3건 이상</th> <th>3건 미만 2건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계획</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r> <tr> <td>도로 및 공항</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r> <tr> <td>교통</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r> <tr> <td>조경</td> <td>0.75</td> <td>0.7</td> <td>0.6</td> <td>0.5</td> <td>0.4</td> </tr> <tr> <td>점수(계)</td> <td>3.00</td> <td>2.8</td> <td>2.4</td> <td>2.0</td> <td>1.6</td> </tr> </tbody> </table> <p>*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 등급기준은 부표 1을 참조한다.</p>	분야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도시계획	0.75	0.7	0.6	0.5	0.4	도로 및 공항	0.75	0.7	0.6	0.5	0.4	교통	0.75	0.7	0.6	0.5	0.4	조경	0.75	0.7	0.6	0.5	0.4	점수(계)	3.00	2.8	2.4	2.0	1.6
분야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도시계획	0.75	0.7	0.6	0.5	0.4																																	
도로 및 공항	0.75	0.7	0.6	0.5	0.4																																	
교통	0.75	0.7	0.6	0.5	0.4																																	
조경	0.75	0.7	0.6	0.5	0.4																																	
점수(계)	3.00	2.8	2.4	2.0	1.6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2	<p>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p>* 1주 5일 이상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p>																																		
유사용역실적	회사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건수	8	<table border="1"> <thead> <tr> <th>경력</th> <th>수</th> <th>우</th> <th>미</th> <th>양</th> <th>가</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8</td> <td>7.1</td> <td>6.6</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p>*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산정은 부표 1을 참조한다.</p>	경력	수	우	미	양	가	배점	8	7.1	6.6	5.6	4.8																						
		경력	수	우	미	양	가																															
배점	8	7.1	6.6	5.6	4.8																																	
금액	7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250% 이상</th> <th>200% 이상</th> <th>150% 이상</th> <th>100% 이상</th> <th>50% 이상</th> <th>50%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7</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d>3.5</td> </tr> </tbody> </table> <p>*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산정은 부표 1을 참조한다.</p>	등급	250%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7	6.3	5.6	4.9	4.2	3.5																						
등급	250%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7	6.3	5.6	4.9	4.2	3.5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신용도	입찰참가제한기간(최근1년간)	지정기간	7	1)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3	1)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별점			1)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감점 * 공동도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별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산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누계 평균 별점</td> <td>1점이상 2점미만</td> <td>2점이상 5점미만</td> <td>5점이상 10점미만</td> <td>10점이상 15점미만</td> <td>15점이상 20점미만</td> <td>20점이상</td> </tr> <tr> <td>점수(감점)</td> <td>0.2</td> <td>0.5</td> <td>1</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누계 평균 별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누계 평균 별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 건설기술 - 특허 - 실용신안	2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위 2)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2)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문 총매출액	10	<p>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3%이상</th> <th>3.0%미만 2.5%이상</th> <th>2.5%미만 2.0%이상</th> <th>2.0%미만 1.5%이상</th> <th>1.5%미만</th> </tr> <tr> <th>점수</th>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p> <p>3)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p> <p>4)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p>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 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p>1)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p> <p>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동 기간 내에 공공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p>*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r> <th>활용건수 (건)</th> <td>5 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h>활용금액 (억원)</th> <td>20 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 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p>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 항 가 목	평 가 요 소	세 부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자	중복비율	4	1)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 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해당용역기간* × 100) * 해당용역기간 : 6개월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150%미만</td> <td>150%이상 200%미만</td> <td>200%이상 250%미만</td> <td>250%이상 300%미만</td> <td>30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구 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복비율	6	1)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해당용역기간* × 100) * 해당용역기간 : 6개월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150%미만</td> <td>150%이상 200%미만</td> <td>200%이상 250%미만</td> <td>250%이상 300%미만</td> <td>30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3) 분야별 기술자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 * 도시계획 50%, 도로 및 공항 15%, 교통 15%, 조경 20%,	구 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구 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 활동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여야 한다.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모두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 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3개 이하로 한다.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입찰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기술자의 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재정상태 건실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각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양식12]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10]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책임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11]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 가. 참여기술자 등급평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산정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되며, 용역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된 해당분야별 참여일수를 산정하여 년수로 환산한다.
- 다. 평가분야는 직무분야 별(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라. 해당 용역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365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참여기술자에 대해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득점기준)에 이적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또는 회사 경영악화(이적 전 회사발행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로 인한 이적 및 이적 전 회사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미적용)

[산출식]

= 참여기술자 기술자 항목(등급, 경력, 실적)별 배점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0.9 + 0.1 \times (A/365)$ (A : 이적 후 경과일수)

- 마. 참여기술자 구성관련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
100%	50%	15%	15%	20%

- ※ 참여기술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 기술자 중 기술사로 선임하여야 함.
(기술사 선임 미충족시 PQ 평가에서 제외)
- ※ 인원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바.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다음과 같이 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 수행건수를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각 배점에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한다.

[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 및 공항분야 참여기술자의 실적 (건수)]

= $\Sigma\{\text{최근 10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건수}\}$

= $\Sigma\{[(\text{단일 건 유사용역 준공금액} \times \text{용역규모에 따른 유사도}) / \text{본 용역 기준금액}]\}$ 의 비율별 건수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가) 최근 공고일 10년 기준 당해 용역과 유사한 공종의 용역사업(10년내 해외 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중 입찰 공고일을 준공으로 준공된 용역사업으로 다음 사업의 조사, 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

- 단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마스터 플랜, 경관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환경생태복원사업 및 아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사업

구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범위 (예)
단지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舊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舊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평택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개발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마스터 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 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한 마스터 플랜으로 주 목적이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인 용역
경관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에 의한 도시기본경관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경관계획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한 시가지, 수변,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 가로환경 경관계획 등 용역의 주목적이 경관계획인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구역의 경관계획 용역실적

구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범위 (예)
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조성사업, 도시 녹화계획,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조성사업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사업
환경 생태 복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하천복원, 산림식생복원, 담수생태계복원, 동물서식환경복원, 비탈(인공)면 녹화계획, 생태공원, 환경공원, 종합산림생태복원, 식물원, 훼손지(토취, 광산, 자연재해)복원 사업 등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 나) 해당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실적관련 관리기간(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등)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해야 함
-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건수와 실적금액은 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총용역비 및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

2)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건수 산정법

$$\Sigma\{\text{최근 10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건수}\}$$

$$= \Sigma\{[(\text{단일 건 유사용역 준공금액} \times \text{용역규모에 따른 유사도}) / \text{본 용역 기준금액의 비율별 건수}]\}$$

구분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비율별 건수	3건	2건	1.5건	1건	0.5건	0.25건

가) 본 용역 기준금액 : 540백만원

나) 용역규모에 따른 유사도 : 당해 용역 대지기준 규모 대비 단일 건 유사 용역 대지규모 비율

구 모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 당해 용역 대지기준 규모 : 4,100,000㎡

사.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의 평가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등급별 기준비율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기준비율(%)]

$$= \sum \{(\text{최근 5년간 각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대지면적}) / \text{당해용역 대지면적**}\} \times 100$$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가) 최근 공고일 5년 기준 당해 용역과 유사한 공종의 용역사업(5년내 해외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중 입찰 공고일을 준공으로 준공된 용역사업으로 다음 사업의 조사,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단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마스터 플랜, 경관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환경생태복원사업 및 아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사업

구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범위 (예)
단지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舊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舊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평택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개발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마스터 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 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한 마스터 플랜으로 주 목적이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인 용역

구분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인정 범위 (예)
경관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에 의한 도시기본경관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경관계획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발주한 시가지, 수변,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 가로환경 경관계획 등 용역의 주목적이 경관계획인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경관계획 용역실적
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조성사업, 도시 녹화계획,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조성사업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사업
환경생태 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하천복원, 산림식생복원, 담수생태계복원, 동물서식환경복원, 비탈(인공)면 녹화계획, 생태공원, 환경공원, 종합산림생태복원, 식물원, 훼손지(토취, 광산, 자연재해)복원 사업 등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나) 해당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실적관련 관리기간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건수와 실적금액은 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총용역비 및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

라) 당해 용역 대지면적 : 4,100,000㎡

2) 등급별 배분

가) 등급별 준비비율에 따라 다음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
준비비율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수	8	7.1	6.6	5.6	4.8	0

나) 유사실적이 당해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하며, 다호의 업체 배분수 산정 시에는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 상기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 8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 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등급 업체 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 (예시 참고)

- 참여업체 수 3개사 이하: 참여업체 수 × 75%
- 참여업체 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참여업체 수 × 40%
-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참여업체 수 × 30%
-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최상위등급(“수” 8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배분 예시]

업체 수	등 급					업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2	(1)				12	4	4	4		
4	2	2				13	4	4	4	1	
5	2	2	1			14	4	4	4	2	
6	2	2	2			15	5	5	5		
7	2	2	2	1		16	5	5	5	1	
8	2	2	2	2		17	5	5	5	2	
9	3	3	3			18	5	5	5	3	
10	3	3	3	1		19	6	6	6	1	
11	3	3	3	2		20	6	6	6	2	

나. 유사용역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등급	250%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7	6.3	5.6	4.9	4.2	3.5

- ※ 등급 = 회사별 유사용역 준공금액의 합 / 본 용역 기준 금액
- 유사용역의 범위 : ‘가’항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참조
 - 본 용역 기준금액 : 540 백만원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 1)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2012, 2013, 2014년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 × 100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4)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 1)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2)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공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 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 가.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용역(감리용역 제외)이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비중(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다. 중복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및 조달청 계약자료 등으로 평가한다.
- 라.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희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마.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한다.
- 바. 참여기술자는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사. 참여기술자가 3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하중이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1. 제출양식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확인서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4]	참여기술자 현황
[양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7]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양식 8]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0]	업무중복도
[양식11]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12]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13]	자기평가서
[양식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CD 1개 별도)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m²)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 신청서

2015년 월 일

용역명 :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귀사에서 시행할 상기용역의 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제외 등 귀사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공동도급 주 소 :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도급 주 소 :

참여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도급 주 소 :

참여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2부
3. 인감증명서 1부 (원본에만 첨부)
4. 사용인감계 1부 (원본에만 첨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CD 1부 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참여기술자 현황

□ 총괄표

구 분		분야	등급	생년 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 기술자	(도시계획) ○○○									
	(도로 및 공항) ○○○									
	(교통) ○○○									
	(조경) ○○○									
분야별 참여 기술자	(도시계획) ○○○									
	(도로 및 공항) ○○○									
	(교통) ○○○									
	(조경) ○○○									

※ 기술자의 경력·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금액	대지면적 (㎡)	용역종류 유사도%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주1)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주2)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첨부 : 용역 수행 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 확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자				비고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 (월)	제재명 및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 주1) 용역업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주2) 참여기술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주3) 상기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누계평균벌점	비 고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사 업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재 무 결 산 기 준 일		
등 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도	
등 급 평 가 일		
등 급 유효 기 간		
신 용 평 가 기 관		

주1)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000 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 2조 제 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보호기간	건명	등록권자	출원자	참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 수	비고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주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주2)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주3)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주4)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등록원부 사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첨부
- 주5)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고

- 주1)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2012년~2014년)
- 주2)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주3)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주4)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주5)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주6) 건설부문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은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과 동일한 회계법인의 증빙을 받은 서류만 인정함
- 주7) ‘건설부문’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건설용역업을 말함

□ 기술 활용실적

구 분	제 목	활용실적연혁				활용실적		점 수
		활용년도	고시일 및 최초출원일	만료일	경과기간 (경과기간계수)	건수 (건)	금액 (백만원)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계								

- 주1) 기술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으로 유효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사항에 부합되는 실적만 작성한다.
- 주2)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주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주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명서를 첨부한다.
- 주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주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중복 기간 (개월)	발주처명 (연락처)	참여분야 및 기간		비고
						참여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 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000)								

※ 본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타 용역 수행과업 중복개월 수

- 사업 책임 기술자 : 성명 ○ ○ ○ ○ 건 ○ 개월
- 분야별책임기술자 : 성명 ○ ○ ○ ○ 건 ○ 개월
- 성명 ○ ○ ○ ○ 건 ○ 개월
- 성명 ○ ○ ○ ○ 건 ○ 개월
- 성명 ○ ○ ○ ○ 건 ○ 개월

주1)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주2)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로 내용을 기재

주3)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2015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공사명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자	합 계		50		
	사업책임기술자 (○○○)	계	18		
		등 급	4		
		경 력	6		
		실 적	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22	
		소 계	등 급	5	
			경 력	8	
			실 적	9	
		도시계획 (○○○)	등 급	1.25	
			경 력	2.00	
			실 적	2.25	
		도로 및 공항 (○○○)	등 급	1.25	
			경 력	2.00	
			실 적	2.25	
		교통 (○○○)	등 급	1.25	
			경 력	2.00	
			실 적	2.25	
		조경 (○○○)	등 급	1.25	
			경 력	2.00	
실 적			2.25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 여 기술자	분야별 참 여 기술자	계		8			
		소 계	등 급	2			
			경 력	3			
			실 적	3			
		도시계획 (○○○)	등 급	0.5			
			경 력	0.75			
			실 적	0.75			
		도로 및 공항 (○○○)	등 급	0.5			
			경 력	0.75			
			실 적	0.75			
		교통 (○○○)	등 급	0.5			
			경 력	0.75			
			실 적	0.75			
		조경 (○○○)	등 급	0.5			
			경 력	0.75			
			실 적	0.75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계	2		
				교육훈련	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15			
			건수(면적)	8			
금 액			7				
3. 신용도	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7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별점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 기술자	6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주2)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 표기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체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주3) 공문 및 평가책자에 첨부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양식 14] 표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015. .

○○○○ (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수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서 등록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직장정보(직장명, 부서, 직위/급,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락처(사무실,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소(직장, 자택), 학력정보(출신학교, 학과, 학위취득여부), 자격사항(자격증 등록번호, 합격일), 해당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 세부 경력), 실적(참여건수, 세부내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수원은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참가신청, 접수 및 처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참가신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용역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단 용역 종료일 전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 등의 사건이 발생될 경우 그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격 및 경력 확인)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시점부터 용역종료일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